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최영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1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0일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박기재, 안광석, 이은주, 정지권
정진철, 조상호, 최기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문학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후원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후원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은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경비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나
- 서울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제4조)을 기 추진 중에 있어 금번 조례제정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원(제5조)에 대한 사항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

조례(안)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내용	예산(천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 제4조(경비지원)	○ 2020 메세나 지원 및 기부활성화 사업(서울문화재단)	550,000
	○ 2020 메세나 데이 기획·운영(서울디자인재단)	9,857
합계		559,857

- ※ 첨부 1. 2020 서울메세나사업 기본계획
- 첨부 2. 2020 기업 메세나 사업계획(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양훈

☎ 02-2180-7934

e-mail : huny101@seoul.go.kr